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
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32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2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의 『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』 및 『금천구 위원회 운영 관리 및 정비계획』에 따라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의 임기 및 해촉(안 제7조)

4. 관계법령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

5. 검토의견

- 금번 제출된 개정안은 상설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국민건강증진법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06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 ①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